

1. 개정이유

「구급지도관 운영규정」을 「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으로 전부개정하여 119구급대원들의 사기양양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「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으로 제명변경

나. 양성 교육기관 선정, 구급교육운영 중요사항 협의, 실태점검, 평가 및 구급전문교육사 인증시험의 중용사항 심의, 결정 등을 위한 구급교육훈련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

다.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해 ‘구급전문교육사’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평가 시험 실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소방청훈령 제 호

구급지도관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안

구급지도관 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